

- 407, 408, 409, 410, 411, 422, 423, 431)
- (2) 제조과정 중 잔류할 수 있는 이소프로필알콜 등 잔류용매, 불소화물 등 유해물질 규격 강화 또는 신설(II. 제3. 가. 321, 322, 325, 331, 347, 348, 356)
- (3) 세균수, 대장균, 살모넬라, 진균수 등

미생물 규격 신설(II. 제3. 가. 363, 364, 365, 422)

- (4) 아미드펙틴 신규지정(II. 제3. 가. 433)

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- 식품의약품안전청 공고 제2009-239호, 2009. 8. 28 -

식품의약품안전청은 비교적 품질변화가 적은 식품인 식용유지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함으로써 실험여건이 구비되지 못한 영세업체의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, 식품첨가물 제조업자가 식품첨가물의 품목제조보고 시 제출하여야 하는 유통기한 설정사유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기준을 정하고자 「식품의 유통기한 설정기준」 일부개정고시(안)을 행정예고하였습니다.

□ 주요내용

- 가.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는 대상 품목 확대(II. 1. 바)
 - (1) 식용유지류에 대한 권장유통기간을 제시하여 유통기한 설정실험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함.
- 나. 고시명을 “식품 등의 유통기한 설정기준”으로 변경

- 다.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방법 및 절차 등 관련 규정 추가
- 라. 식품첨가물의 유통기한 설정 실험 면제 조건 관련 규정 추가
- ※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청 홈페이지(www.kfda.go.kr)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